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서식]

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.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하시기 바랍니다.

(안쪼)

		요요되트 되고	- 78			<u> </u>	8 서는 굿에	V 1	글 아시기 마틴	3 H L F .				(=	보숙)
접수번호				접수일					처			리기간 7일			
신청인 (기업)	1	기업체명							② 사업자등록번호						
									③ 업종(KSIC)						
		(홈페0	지:	ij:)					④ 주요 생산품						
	(5)	대표자명							생년월일 성별			내국인/외국인			
	6	주 소							화번호						
		-II OII /			4 E \ HU II O I				팩스번호						
	(7)	매출액(년도)	·										
	8	종업원 수(년)		명 ⑨ 개업 연월일(월	i	일)
	10	기업 유형	[] 대기업 [] 중견기업 [] [[] 연구원·교원 창업기업 []												
기업 부설 그 관	11)	기업부설 연구기관명						(12)	설립 연월	일					
	(13)	기업부설	성명	명 직위				생	생년월일			근무	형태	 .H	
		연구기관장										[]전임 []겸임			
	14)	소재지							화번호						
									팩스번호						
	15)	신청분야			[]과학기	기술			[]서비스						
	16	연구분야	[]{ []{ []{	생명과학 식품	명과학 []섬유 []소 품 []전기전자 []화]]]]]	[]하수·폐기물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[]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[]부동산 및 임대 []운수 []교육서비스 []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[]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 []도매 및 소매 []숙박 및 음식점 []금융 및 보험 []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 []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[]기타						
	① 주 연구 내용														
	18	연구개발 인력	연구점	전담요원 명				19	① (연구기관 내 위치한) 연구기자재			종
	20		[] {	건물 전체			[] 독립공	간	간		[] 분리구역				
		연구공간	[] :	소유 임대 건	물	m²	[] 소유 [] 임대		m²	[] 소] 임디			ı	m²
െ വ	7-	게 HF트 지	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인건비						백만원						
(I) E	! T '/	개발투자 년도)	연구시설비						백만원						
		· 	그 밖의 연구개발투자액									백 만			
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													따		
의 퓌프	-1 E	= YI L'Ö H	-1-1	•								년	월		일
기업대													(서명	또는	인)
(사)	한	·국산업기	술건	진흥협:	회 귀하										

수수류

없음

- 연구개발활동 개요서(별지 제2호서식) 1부
- 2. 연구기자재 현황(별지 제3호서식) 1부
- 3. 연구개발인력 현황(별지 제4호서식) 1부
- 4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(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
- 5. 회사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조직도 1부
- 6. 기업부설 연구기관이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내부 도면(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을 포함합니다) 1부
- ______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비 명세서 1부(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합니다)
-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가입증명서(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합니다)

첨부 서류

-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1호 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(⑯의 신청분야가 서비스인 기업부절 연구기관만 해당합니다)
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(벤처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 10. 구기관만 해당합니다)
- 11. 연구원・교원이 창업한 중소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(해당 기업만 해당합니다)
-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임을 증명 하는 서류(해당 기업만 첨부합니다)
-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임을 증명 하는 서류(해당하는 기업만 첨부합니다)
- 14.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직원이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(국민연금·국민건강보험·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) 1부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(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)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.

기업대표

(서명 또는 인)

신청서 작성방법

- 1. ③의 "업종"란에는 해당 기업의 주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(KSIC코드)에 따라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.
- 2. ④의 "주요 생산품"란에는 해당 기업에서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대표적인 제품, 서비스를 적습니다(예, 자동차 타이어, 핸드폰, 온라인게임, 조경설계 등)
- 3. ⑥의 "주소"란에는 해당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재지의 번지수와 빌딩명, 빌딩 호수까지 적습니다.
- 3. ③의 "매출액"라은 신청일 기준 최종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기준연도를 적습니다. 5. ⑧의 "종업원 수"란에는 가장 최근의 상시 종업원 수를 적습니다(일용직은 제외합니다).

- 6. ⑤의 "개업 연월일"란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 연월일을 적습니다. 7. ⑩의 "기업 유형"란의 구분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8조,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를 기준으로 선택하고,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벤처기업일 경우 유효기간을 적습니다. 관한 특별법」 제2조를 기준으로 선택하고,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벤처기업일 경 8. ⓒ의 "설립 연월일"란에는 해당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기업부설 연구기관을 설립한 날짜를 적습니다
- 9. (%)의 "소재지"란에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의 번지수와 빌딩명, 빌딩 호수까지 적습니다. 10. (%)의 "신청분야"란은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연구개발활동에 따라 해당 분야를 선택합니다.
- 11. 🔞의 "연구분야"란은 📵의 신청분야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분야를 선택합니다. 다만, ⑯에서 "서비스"를 선택 한 기업은 해당 기업의 주 업종과 관련한 연구 분야를 선택합니다.
- 12. ⑪의 "주 연구 내용"란에는 구체적인 연구 내용의 대표적인 활동을 적습니다.
- 13. ⑱의 "연구개발인력"란에는 연구개발인력 현황(별지 제4호서식)의 직원 수를 적습니다.
- 14. ⑩의 "연구기자재"란에는 연구기자재 현황(별지 제3호서식)의 연구기자재 수를 적습니다. 15. ⑩의 "연구공간"란에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아래 형태에 따라 "건물 전체","독립공간","분리구역"을 선택하고, 자사 소유 건물 일 경우에는 "소유", 임대건물일 경우에는 "임대"를 선택합니다. 건물 전체: 건물 전체를 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 사용하는 경우(건물의 전체 연면적 기재)

 - 독립공간: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고 사방이 고정된 벽체로 천장까지 구분한 공간
- 분리구역: 칸막이 등으로 연구공간을 구분한 경우 ※ 다만, 분리구역의 경우에는 「중소기업기전에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서 50제곱미터를 초 과하는 면적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만 선택합니다.

 16. ②의 "연구개발투자"란에는 신청한 해부터 향후 1년간의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투자계획을 "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인건비, "연구시
- "그 밖의 연구개발투자액"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. 설비

